



## 2 총회임원회 보고

제102회기 총회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총회장 전계현  
서 기 권순웅

### 1. 조 직

- 총 회 장 : 전계현
- 부 총 회 장 : 이승희 최수용
- 서 기 : 권순웅
- 부 서 기 : 김종혁
- 회록서기 : 장재덕
- 부회록서기 : 진용훈
- 회 계 : 서기영
- 부 회 계 : 이대봉

### 2. 회 의

#### 1) 임원회

#####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7. 9. 19(화) 7:30

☞ 장 소 : 그랜드호텔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19일 회무 일정을 점검하다.
- ② 회무중 조찬 겸 임원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되, 긴급현안의 경우 수시 회집키로 하다.
- ③ 총회 현장에서 김창수 총무에 대한 조사처리키로 한 사안에 대해 임원회에 위임되었으므로, 본회는 서기 부서기 회계에게 맡겨 일단 권면토록 한 후 처리 결정키로 하다.
- ④ 총회 본회가 위임한 천서관련 윤익세 목사, 김상운 목사, 구조조정위원회 관련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다.

#####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7. 9. 20(수) 7:30

☞ 장 소 : 그랜드호텔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20일 회무일정을 점검하다.
- ② 총무 김창수 목사에 대한 소위원회 보고를 받고, 본회 현장에서 사과케 하고 매듭짓도록 하다.

#####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7. 9. 21(목) 7:30

☞ 장 소 : 그랜드호텔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21일 회무일정을 점검하다. 현안에 대해서는 회무 전 회집키로 하다.
- ② 09:10 임시회의실에서 회집하여, 윤익세 목사가 요청한 특별조사위원 기피신청에 대하여 의논

하니, 본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반려기로 하다.

- ③ 17:50 임시회의실에서 회집하여 저녁회의 일정으로 정치부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를 우선 받도록 하다.
- ④ 긴급동의안과 은급재단 건의 처리문제를 협의하다.

####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7. 9. 22(금) 8:30

☞ 장 소 : 그랜드호텔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긴급동의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다.
- ② 임원회가 본회에 보고하여 개혁신학의 실제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서기에게 맡겨 제안키로 하다.
- ③ 주진만 목사가 청원한 건은 개인의 청원임으로 다루지 않기로 하다.

####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17. 9. 28(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순서를 점검하다.
- ② 2017년 9월 28일 오후2시에 총신대 양지캠퍼스 주기철 기념관, 복원된 소래교회당 및 순교자 기념관 방문하기로 가결하다.
- ③ 제102회 총회 주요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다.  
가. 제102회 총회 회의록을 서기단에 맡겨 정리토록 하고 차기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나. 신규임원 수련회는 2017.11.20(월) ~ 21(화), 제주도 순교기념관 방문하고 제주노회 교회 목회자부부를 초청하여 위로키로 가결하다.  
다. 신년하례회는 2018.1.4(목) 오전11시, 총회회관2층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라. 제54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일정을 2018.4.30(월) ~ 5.2(수)로 하기로 하고 장소는 추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마. 제103회 총회는 2018.9.10.(월) ~ 14(금), 반야월교회당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 ④ 중부노회 헤린교회 김중수 외 4명이 소송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62177,서울지법)는 당사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키로 가결하다.
-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2017가합548041) 심문기일이 2017.10.19.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하니, 1차 변론이므로 진행하고 차후 진행여부를 조정토록 가결하다.
- ⑥ 제102회 총회 수요예배 헌금은 순교자기념관 방문 헌금과 제주노회 격려금으로 사용토록 가결하다.
- ⑦ 제102회 총회에 보고된 총회재판국 판결문 중 “환부”로 결정된 건들에 대해 가을정기노회 전 까지 받도록 요청하는 노회가 있는 바, 서기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⑧ 차기임원회는 2017.10.19.(목) 10시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0. 19(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2회 총회회의록 채택은 서기단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③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관련 소송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변호사를 참석시켜 진행경과를 청취하다.
- ④ 제102회 상비부 업무 조정과 협력을 위해 11월 23일 10:30 총회회관에서 상비부장 연석회의를 가지며, 동일 오후 2시 전국노회장, 서기 연석회의 갖도록 하며, 총회 실행위원회 일정은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다.
- 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총회 직전 단행한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 교과부에 공문을 통해 정관 송부 요청과 승인 보류 등 법적 대응에 대하여 서기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⑥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예배가 10월 29일 오후 4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설교, 예수인교회(민찬기 목사)가 찬양을 맡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⑦ 사회복지법인 재단이사 추천 요청은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추천기로 가결하다.
- ⑧ 동서울노회가 보내온 폐당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⑨ 우종대 목사가 부전지 첨부하여 보내온 상소장, 고소장 기각 관련 건인 ㉞ 관련안건 반대의 건 발원자 동영상 확인 청원 건은 허락하지 않고, ㉟ 이의서(현의부에서 본인확인없이 노회경유 미비로 기각함) ㊱ 한영재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장 재접수 청원 ㊲ 소재영 씨 외 5인에 대한 고소장 재접수 청원 건은 현의부로 이첩기로 가결하다.
- ⑩ 중부노회 관련 건으로 ㉚ 이택규 목사 외 12명이 보내온 환부결의한 중부노회 사건을 총회재판국으로 환부 청원의 건과 ㉛ 한준택 목사 외 39명이 보내온 노회행정지도 청원(임원구성보고서, 직인변경신청서, 제55회 정기회 경위서)과 ㉜ 중부노회 노회장 박봉규 목사가 보내온 공문의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살펴 보고토록 하되 위원은 서기 권순용 목사, 부회록서기 진용훈 목사, 회계 서기영 장로로 가결하다.
- ⑪ 함경노회가 보내온 제102회 총회 성석교회 관련 정치부 보고 원인무효 청원 건은 회의록채택 후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⑫ 산정현교회 임강상 장로 등이 총회행정지도를 요청한 해 교회 소속 관련 총회 환부 결정 건은 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살펴보고토록 하되, 위원은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 부서기 김종혁 목사,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로 가결하다.
- ⑬ 총회가 결의한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업무 파악과 규정 개정을 위해 위원으로 서기단 4인과, 부회계, 총무 등 6명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⑭ 제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문 보고 시 “환부”하기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일반사법제도에서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총회의 의도는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다시 재판할 경우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또 상회에 재 상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해 노회에서는 가급적 분쟁이 화해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첨가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⑮ 서광호 목사 외 3명이 보내온 경남동노회의 총회결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리 청원의 건은 서기단에 맡겨 살핀 후 행정조치토록 가결하다.
- ⑯ 차기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총회회관에서 소집기로 하다.

##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3(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 낭독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신대학교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무용 목사(배임증재 등, 2016형제 87221)와 김정훈 목사(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2017가합548041)를 출석케 하여 보고하니 청취하고, 총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다.
- ③ 제102회 총회회의록 채택을 위해 서기단에 위임하여 정리한 회의록을 보고 받고 심의하니 자구수정하여 채택하다.
- ④ 11시 50분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로 기도케 하고 정회하다.
- ⑤ 13시 20분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로 기도케 하고 속회하다.
- ⑥ 제102회 총회 수입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다.
  - 가. 총신재단이사회 총장사퇴 및 정상화 대책 관련에 대하여는 본회가 적극 대처하기로 하다.
  - 나. 제101회 특별위원회 중 국가법대책위원회, 전력피크제대책위원회,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하다.
  - 다. 3.1 만세운동(기미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은 별도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 라. 총회직원 업무규정개정 및 직제개편에 대하여는 제6차 임원회 결의대로 소위원회에 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다.
  - 마.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의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다루기로 하다.
  - 바. 한교총 탈퇴 및 한기연 추진 결행의 건에 대하여는 총회 본회의에서 이미 결의한 사안이므로 결의대로 참여기로 가결하다.
  - 사. 차별금지법 반대의 건은 사회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 아. 규칙부(부장 신현철)가 보고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니, 규칙부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을 변경한 건이 다수 발견되므로 규칙부에 반려하되, 부서기와 부회록서기가 내용을 정리토록 위임하기로 하다.
  - 자. 특별위원선정은 서기가 각 구도별로 추천받아 정리한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 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전 총회장이 정년문제로 위원직을 사임한 바, 총회장이 소집하여 조직하도록 가결하다.
- ⑦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가 보내온 제102회 긴급동의안 결의대로 시행 후속처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총장선출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임무인 바 운영이사회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총회 결의사항을 참고하도록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⑧ 총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보내온 현 총장 직위해제 및 탄원 전달의 건은 보고 자료로 받기로 하다.
- ⑨ 총신대학교 현 상황 관련 성명서 발표의 건으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개정한 정관 내용을 살펴 본 후 '사유화, 교단화'에 강한 의혹이 있어, 향후 대책으로 기도회와 서명운동, 비용 후원금 모금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서기와 부회록서기가 정리하여 총회장께 보고한 후 기독교신문에 발표토록 가결하다.
- ⑩ 현 총신관련 법적 대응과 총회 전반의 법적 자문을 위해 오병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 위촉하기로 하며, 총신관련 법적 대응은 총무와 서기에게 맡겨 처리한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⑪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관련보고와 제102회 총회 수입사항 처리를 위해 11월 23일 오후 1:30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도록 하며, 기존 계획된 회의인 총회 상비부장 연석회의와 전국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는 당일 오전 10:30으로 조정하여 개최토록 가결하다.

- ⑫ 서기와 총무가 요청한 총회 제102회기 행정지침 지역설명회는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⑬ 허활민 목사가 신청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17카합81456)과 총회결의 무효 확인(2017가합570918)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하고, 서기와 총무에게 위임키로 가결하다.
- ⑭ 울산남교회 관련 건으로 ㉞ 남울산노회가 보내온 총회 재판환부 및 소원채용결의에 대한 재심 및 상고 청원의 건과 ㉟ 남울산노회 행정중지 및 지도 건은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되, 1개월간 노회에게 시간을 준 후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⑮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전인식)가 요청한 '종교개혁500주년 및 설교집 출판 감사예배 시행의 건'은 사업과 재정청원은 요청대로 하락하되, 해 위원회 사업은 본 행사를 끝으로 종료하도록 가결하다.
- ⑯ 제6차 임원회 회의록 채택 시 논의된 부전지 침부된 문서접수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안을 사무당국에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⑰ 차기 회의는 11월 20일 저녁 제주에서 갖기로 하다.

###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20(월) 19:30

☞ 장 소 : 신라호텔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 임원 상비부장, 전국 노회장서기연석회의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확정하다.
- ③ 실행위원회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확정하다.
- ④ 실행위원회에 보고토록 제102회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 건은 현재 임원회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보고토록 하다.
- ⑤ 총신 운영이사회가 보내온 실행위원회 상정의 건을 검토하니, 운영이사회 측과 더 대화한 후 실행위원회에 상정토록 가결하다.
- ⑥ 차기 총회 목회대학원장은 총회 결의대로 직전총회장 김신규 목사로 가결하다.
- ⑦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권역별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과 서기가 조정하고 23일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특별위원 선정 시 재판국원, 선관위원, 감사부원, 상비부장은 배제한다.)
- ⑧ 총회장 명의의 종교인 납세 관련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게재하였음(국민일보, 기독교신문)을 보고하니 추인 가결하다.
- ⑨ 차기 임원회는 23일 실행위원회 후 회집키로 가결하다.

###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23(목) 15: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서기가 11월 27일 진행하기로 한 총신 보고회 및 기도회 준비상황과 순서를 보고하니 조정하

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③ 서기가 그동안 권역별로 수집하여 정리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서기에게 맡겨 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완료하도록 가결하다.

####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1. 27(월) 16:30

☞ 장 소 : 충현교회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금일 진행된 총신 비상사태 보고회 및 특별기도회를 평가하니, 총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순서 내용상 잘 정리되어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차후 각 권역별 집회를 시달하여 진행하고 보고케 하도록 가결하다.
- ③ 서기가 특별위원 조정결과를 보고하니 은급재단 전권위원회는 보류하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은 유인물대로 하며, 문제가 제기된 위원회는 살핀 후 다음 주 신문에 발표토록 가결하다.
- ④ 개혁사상 부흥운동 특별위원회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사업추진은 총회장과 서기가 추진하며, 청원한 예산 6,600만원은 재정부에 요청토록 가결하다.
- ⑤ 11월 23일 진행된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보고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⑥ 차기 회의는 12월 11일 11:30 포항에서 개최하며, 지진 피해 교회를 방문 위로기로 가결하다.

#### (11) 제11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2. 11(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신대학교 관련 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 가. 운영이사회가 보내온 총신대학교 제7대 총장 선출 결과를 보고 받다.
  - 나.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를 대상으로 제102회 총회 제1차 정책실행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신 법인이사가 속해있는 노회에 지시하여 “총신법인이사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총신 운영이사회 회의록과 총신 법인이사회 회의록 및 법인 정관 및 총회결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김영우 현총장을 해임하고 김영우 현총장을 재선출하지 말 것과 운영이사회 규정의 절차대로 새 총장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하며, 2017년 12월 29일까지 법인 정관을 2017. 9. 14 이전으로 환원하라”고 명령하고 이에 불복하는 것은 해총회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관련 총회 결의 및 제1차 실행위원회 결의 시행의 건은 부총회장과 서기, 부서기, 회계에게 맡겨 처리기로 가결하다.

##### ■ 긴급동의안 내용

1. 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의 임기는 전임 총장이었던 길자연 씨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공증한 것임을 102회 총회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항에서 확인된 임기를 지키지 아니할 시 당사자(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를 소속노회(충청노회)가 1항의 임기만료 시로부터 3개월 내 면직하게 하고, 지시한 그 기간 내



처리한 후 해 판결문과 충청노회 직인을 기한일의 총회사무국 업무종료 시까지(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을 엄수하여 총회 서기에게 접수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충청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거 폐지되는 것으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충청노회 폐지에 따른 소속 노회원의 이거관련 절차는 총회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결의의 시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일체를 102회 총회임원회에 일임하도록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청원한 총신재단이사회 정관 원상복구 청원과 총신 원우회가 청원한 총장선임과정 공개, 총장후보 공개, 원우보호 청원과 총신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가 청원한 총장선출 학생 참정권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청원 등은 총신 운영이사회에 보내 운영이사회의 결의와 방침을 보고토록 지시기로 가결하다.

마. 제102회 총회 제1차 정책실행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본교단 노회에 소속한 총신대 및 총신대 신학대학원 보직교수의 소속 노회에 지시하여 현 임원들이 소속 보직교수들의 해총회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2018년 1월 8일까지 총회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와 총장으로 선출된 김형국 목사의 인사를 받다.

사. 총신사태 관련 금식기도회 건으로 2017년 12월 18일 11시(월)~20(수) 12시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됨과 기독교신문 광고, 각 노회 참여요청 공문 시행했음을 보고하니 총회장과 총무의 청해부대 방문과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불가피한 외유 일정이 있음에 양해를 구하고, 본회는 기도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진행기로 하다.

아. 서기가 총신대학교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③ 경기북노회 건으로 ㉗ 노회직인 변경 등록의 건과 ㉘ 경기북노회 불법 총대천서에 대한 답변 및 시정요구의 건은 보류기로 가결하다.
- ④ 서전주노회가 질의한 초청교회 지교회 설립에 관한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⑤ 강동노회가 요청한 노회산하 교회 지원의 건과 경동노회가 요청한 포항지역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요청과 멕시코 민족장로교단에서 요청한 멕시코 지진 피해 복구 지원요청의 건은 구체부로 보내 지원토록 가결하다.
- ⑥ 함경노회가 청원한 강제식 목사 처벌 및 총대 영구제명 건은 보류기로 가결하다.
- ⑦ 경기노회 황주용 목사가 진정한 경기노회 박세형 씨에 대한 건으로 “노회에서 박세형 목사에 대하여 불법처리함으로 총회에 소를 제기한 것을 노회요청으로 취하였으나 노회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기노회에 법대로 처리토록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건과 경기노회가 보내온 황주용 목사 진정서에 대한 경기노회 대응 진정의 건은 ‘노회의 결의 위반’으로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⑧ 황수민 목사가 청원한 총회재판국판결이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한 건은 이유없음으로 반려키로 가결하다.
- ⑨ 기독교신문사가 보내온 기독교신문사 현황보고는 보고로 받기로 하다.
- ⑩ 산서노회가 청원한 제102회 총회 긴급동의안 ㉗ 이형철 목사 외 128인이 긴급동의한 허위문서 조사 및 장로 중복 등록조사처리 건 ㉘ 최광염 목사 외 129인이 긴급동의한 산서노회 제반 불법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에 대한 취소 요청은 103회 총회에 청원토록 반려키로 가결하다.
- ⑪ 제7차 임원회가 결의하여 기획행정실에 지시한 교회재판 관련 문서접수 지침(부전지 사용) 보고의 건은 보류기로 가결하다.

- ⑫ 남울산노회 관련 총회 지시공문에 대한 ㉞ 남울산노회의 총회행정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결의 건과 ④ 남울산노회의 총회임원회 위탁 청원의 건(울산남교회 분립의 건)과 총회재판국에 질의한 남울산노회 이성택 목사의 재판국원 적격성 관련 건은 노회가 총회 지시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교회의 분립 지도를 위해 총회 서기와 회록서기, 장로부총회장을 소위원으로 맡겨 처리토록 하며, 재판국의 질의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⑬ 헌의부에서 보내온 우종대 목사 관련 문서 접수 이첩의 건은 보류하고, 우종대 목사의 총회 소속, 재직증명서 등의 은행제출용 서류 발급요청의 건은 서대구서노회에서 제명(삭제) 되었다는 노회장의 답변에 근거하여 은행제출용으로 제한하여 총회소속임을 증명발급토록 가결하다.
- ⑭ 경서노회가 요청한 직지중앙교회 등록 총회결의 이행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결의대로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허락기로 가결하다.
- ⑮ 함경노회가 보내온 ㉞ 권징조례 7장 54조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의를 규칙부로 보내고, ④ 위 조항 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청원의 건은 규칙부 대답을 들은 다음 본회가 추후 처리 방안을 논의기로 가결하다.
- ⑯ 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관련 ㉞ 경산중앙교회 관련 총회재판 환부 건 처리 결과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④ 경산중앙교회 관련 상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절차를 이행토록 답변기로 가결하다.
- 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보내온 복귀 요청의 건은 교단연합교류위원회로 보내 검토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⑱ 제102회기 특별위원회 위원 보완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조정 보완토록 가결하다.
- ⑲ 삼산노회의 건은 화해조정위원으로 강태구 목사, 정계규 목사, 최병철 장로 3인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고 소속교회의 일반 증명 발급은 사안에 따라 발급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⑳ 중부노회의 건은 양측에 보완서류를 받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처리결과 보고시까지 기다리도록 가결하다.
- ㉑ 성석교회 관련 제반 건의 처리는 총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해 위원회로 넘겨 처리기로 가결하다.
- ㉒ 총회장 전계현 목사와 총무 최우식 목사가 군목부와 함께 청해부대 방문일정(12.18 ~ 12.23)과 지원내용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2. 15(금)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본회가 요청하여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답변해온 사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 가. 2018년 1월 4일 오후2시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총신 사태에 대한 임원회의 대응과 운영이사회의 대응을 보고하고 대책방향을 결의토록 하다.
  - 나. 총신사태로 인한 총신 졸업예정 재학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마련한 운영이사회의 대책을 그대로 받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다. 지방신학교(칼빈,대신,광신) 졸업자들에 대한 특별교육 진행의 건은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되, 이수 학생들의 학적관리 등 법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운영이사회가 세워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③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보내온 법인이사 15인에 대한 운영이사회 규칙에 따른 신규 선출과 교육부 보고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운영이사회로 보내 법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해 주도록 회신키로 가결하다.
- ④ 현 총신 재단이사회가 12월 15일 김영우 목사를 신임총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 가. 현 재단이사가 김영우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총회의 결의 위반이자 기만이므로 총회는 강경 대응키로 하다.
  - 나. 기독교신문에 총회결의에 위배되는 총신관련 모든 광고(성명서, 입장발표)는 게재를 금하도록 요청키로 하다.
  - 다. 기독교신문에 총장선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성명서 혹은 인터뷰로 총회임원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가결하다.
  - 라. 금번 김영우 목사 총장선출 건에 대해 본회의 만류에도(본부 제102-273호) 불구하고 선출을 강행한 이사들에 대해 총회 결의정신과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확실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총회장과 서기, 부회록서기에게 맡겨 이행토록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12월 27일(수) 오후2시 총회사무실에서 갖도록 가결하다.

### (13) 제13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2. 27(수)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경기북노회에서 요청한 노회직인 변경 등록의 건과 불법 총대천서에 대한 답변 및 시정요구의 건은 노회 상황파악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 회의록서기 장재덕 목사, 회계 서기영 장로를 위원으로 선임하다.
- ③ 제102회 총회 성석교회 관련 결의사항에 관한 건으로 ㉠ 함경노회가 제출한 강재식 목사 처벌 및 총대 영구제명의 건과 ㉡ 함경노회가 제출한 제102회 총회 현의안 175번 결의에 대한 원인 무효 청원과 ㉢ 강재식 목사가 제출한 석명서는 성석교회 복귀처리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 ④ 제102회 2차 실행위원회(2018년 1월 4일 오후2시) 안건으로 ㉣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관련 건, ㉤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2018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 ㉥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보직교수 및 신학대학원위원회 소속 교수·교직원 각 노회 지도의 건, ㉦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원후원금 노회분담의 건, ㉧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요청한 직인변경등록 허락 청원의 건을 상정토록 가결하다.
- ⑤ 서기가 총신대학교 관련 소송 건을 보고하니 구두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총신관련 소송 변호사 선임계약은 총무 총회장 결재로 진행키로 함)
- ⑥ 김영우 목사에 대한 총회결의사항인 “김영우 목사의 총장임기는 전임 총장이었던 길자연 씨 임기의 잔여기간이므로 임기를 지키지 아니할 시 당사자(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를 소속노회(충청노회)가 1항의 임기만료 시로부터 3개월 내 면직하게 하고, 지시한 그 기간 내 처리한 후 해 판결문과 충청노회 직인을 기한일의 총회사무국 업무종료 시까지(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을 엄수하여 총회 서기에게 접수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충청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거 폐지하기로 하다.”의 실행방법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토록 가결하다.

- ⑦ 총신대학교 비상사태 관련 금식기도회를 개최한 바, 지역에서 요청한 지역별 금식기도회 개최의 건은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⑧ 감사부가 요청한 제102회 총회결의사항(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 및 성석교회 복귀처리위원회 결의) 위법에 대한 시정 이행 요청의 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므로 반려하기로 하되,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의 원만한 합병을 위하여 해 위원회에 12월 29일 예정된 합병예배를 연기하고, 임원 참석은 불가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시행토록 지시키로 가결하다.
- ⑨ 총회역사위원회가 요청한 ㉞ 총회역사관 관장 함성의 목사, 부관장 박창식 목사에게 맡겨줄 것을 추천한 건은 무보수임을 확인한 후 그대로 허락하고, ㉟ 총회역사관 상주직원 배정 요청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⑩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에서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로의 명칭변경의 건은 요청대로 허락키로 가결하다.
- ⑪ 순천노회가 제출한 헌법적 규칙 제3조2항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에 대한 권리에 관한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법대로 답변토록 하다.
- ⑫ 서중노회 김창선 목사가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김창선 목사가 강변교회의 원로목사로 결정된 것은 불법이다)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7가합37251)는 당사자에게 위임처리키로 가결하다.
- ⑬ 총회는급재단에서 제출한 임원의 사임에 따른 추천 요청의 건으로 김성태 이사는 재선임하고, 이사 1인 감사 1인은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⑭ 서기가 김○○ 목사가 내용증명과 시위를 통해 총회서기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고하니,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인사에 대하여 총회 명의로 엄중하게 법적 대처키로 가결하다.
- ⑮ 교단연합교류위원회가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 결과 보고를 받은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 결정 결의를 보고하니, 보고는 받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입 건은 서기단에 맡겨 법적 검토케 한 후 추후 다루도록 가결하다.
- ⑯ 총무 최우식 목사가 1월 1일자 본부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원칙으로 “㉞ 총회 결의에 따라 1실 2국을 3국으로 개편하되, 현 체제를 유지함, ㉟ 전문인력은 해당분야에 배치함, ㊱ 대기발령자는 업무 배치하되 승진에서는 배제함, ㊲ 총회본부 적정인원을 100회기 구조 조정 당시 인원 43명으로 보고, 현 계약직 직원 중 우수인원은 우선 임용하며, 부족인원은 추후 임용함”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하되, 차기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심의토록 가결하다.
- ⑰ 총회 임원 수련회는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유럽에서 진행하되, 주제는 ‘개혁사상 부흥운동 역사연구 및 독일교회의 통일에 대한 역할 연구’로 하도록 하다.
- ⑱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는 일정을 조정하여 2018년 5월 8일(화) ~ 5월 10일(목)까지 진행토록 가결하다.
- ⑲ 차기회의는 1월 4일 실행위원회 직후 임원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 (14) 제1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4(목) 12:5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반기로 가결하고, 12번은 다시 논의토록 가결하다.



- ② 총신 운영이사회가 제출한 총신사태 관련 건은 기존 안전에 추가한 것이므로 실행위원회 안전으로 상정기로 가결하다.
- ③ 서기가 실행위원회 회의자료를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하다.
- ④ 함경노회가 제출한 서경노회의 성석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무효 확인 청원에 대하여는 서기부에 맡겨 임시당회장 파견 시기 등을 확인하여 소속에 관한 처리는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하기로 한 제101회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발급토록 가결하다.
- ⑤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위원회가 제출한 합병예배 진행 허락 요청의 건은 요청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⑥ 중부노회 한준택 목사 측에서 요청한 문서 접수사실 확인 요청은 임원회 소위원회가 해당노회 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접수사실을 확인해 주되, 현재 임원회가 사실 확인 중 임을 명기하여 발급토록 가결하다.
- ⑦ 전 회의록 12번(서중노회 김창선 목사의 소송 대응 건)은 총무에게 맡겨서 대응하기로 하다.
- ⑧ '은급재단 관련 특별위원 선임 등' 남은 안전은 추후 다루도록 하다.

### (15) 제1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17(수)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신사태 관련 교회들의 서명이 6만2천여 건에 달하였으므로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되, 서기에게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③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총회가 9명의 선임을 요청한 바, 장재덕, 이남국, 조순호, 김대은, 민규식 목사, 최병철, 지동빈, 김영구, 이종주 장로로 선임하다.
- ④ 장학재단설립위원회 위원 보강의 건으로 위원으로 이원석 목사, 황남길 목사를 보강하기로 가결하다.
- ⑤ 구 동대전노회 소속 산전현교회 관련 소위원회 장재덕 목사가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강상 장로에게 상소장을 총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여 총회재판국 판결을 통하여 소속노회를 정하도록 보고하니 보고대로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⑥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위원장 이종석 목사)가 요청한 성석교회 복귀를 위한 전권 요청에 대하여는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⑦ 삼산노회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강태구 목사)가 요청한 삼산노회 화해조정에 대한 권한 질의와 삼산노회 소속 모든 교회(총회 전산등록 기준)의 연말정산서류 발급 청원에 대하여는 서기에게 맡겨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⑧ 경상노회 관련 건으로 노회장이 제출한 ㉠ 제102회 총회가 결의한 환부에 대한 유권해석 청원, ㉡ 임시노회 10일 선기에 대한 유권해석 청원, ㉢ 경상노회 제187-1,2차 임시회 후 변동사항 보고, ㉣ 경상노회 직인 및 노회장, 서기 인감 보고 건과 부노회장 방동희 목사가 제출한 경상노회 직인 변경 청원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위원으로 장재덕 목사, 김종혁 목사, 이대봉 장로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살펴 지도한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⑨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가 서전주노회 서현수 목사에 대하여 제출한 소원장과 서전주노회가 처리회간 소원 성립이 안되므로 반력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니, 내용이 '소원건'이 아니므로 허활민 목사의 소원장을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⑩ 허활민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2017카합81456) 결정이 '기각'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⑪ 서전주노회가 요청한 직전 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 피소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요청은 서현수 목사가 천서위원장으로서 총회 현장에서 공적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대응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제100회 21차 총회임원회 결의정신에 따라 총회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가결하다.
- ⑫ 법무법인 둘로스에서 제자교회 관련 자료 요청의 건은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위임받아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요청이므로 요청대로 수락하기로 가결하다.
- ⑬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⑭ 총신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TF 팀과 총신운영이사회 대표, 동창회 대표, 학생대표, 교수회 대표로 구성해 활동케 하다.(전계현 권순웅 진용훈 강진상 현상민 곽한락 정승원)
- ⑮ 기독교신문 사설(2018년 1월 9일자)에 대하여 총회와 임원회, 총회 지도자들의 명예에 대하여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엄중경고하고 정정보도하도록 요청키로 가결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처리는 권순웅 목사와 진용훈 목사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다.
- ⑯ 총신관련 소송비용 처리는 제2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우선 총회 경상비에서 추경하여 사용하되, 회계부와 재정부에 맡겨 지출하기로 가결하다.
- ⑰ 전국여전도회연합회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실무자들에 대하여 총회 전도부에 지시하여 정년 등의 문제를 총회 원칙대로 지도하고 보고케 하도록 지시키로 가결하다.
- ⑱ 총신 재단이사들에 대하여는 서기에게 맡겨 선별적으로 공문시행토록 가결하다.
- ⑲ 차기 임원회는 1월 31일 오전10시, 총회사무실에서 갖기로 하다.

## (16) 제1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 31(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분립 관련 건으로 ㉞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한 전남제일노회 신 임원 조직보고와 ㉟ 전남제일노회 이준행 목사가 제출한 전남제일노회 조직 보고는 합병 위원회에 보내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③ 경남동노회 관련 건으로 ㉞ 경남동노회 제187-1차 임시회 상황보고(성경선 목사 서기직위 원상회복)의 건과 ㉟ 문동현 목사가 요청한 이명결의 무효의 건과 총회지시 위반 처리 건은, 노회의 보고는 처리유보하고, 노회에 합의이행을 재 지시키로 가결하다.
- ④ 규칙부가 보고한 총회선거규정 개정 심의 재검토 보고의 건은 유인물은 받고, 임원 개별검토 후 총회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⑤ 현의부가 각종 청원 및 소장 현의부로 이첩 요구 및 처리 통보의 건으로 ㉞ 총회 이후 각종 청원과 소원장을 총회규칙대로 현의부로 이첩해줄 것과 ㉟ 15차 임원회가 기각한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의 소원장을 직접 받아 처리하겠다는 것은 '총회 서기가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법'이므로 서기부에서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⑥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가 보내온 '총회법규 영어 번역 시행 요청'은 재고하여 '연구하기로 함'으로 통보키로 하다.
- ⑦ 총회는급재단 제102회 총회 결의사항 재검토 요청은 '연구토록' 가결하다.



- ⑧ 총신운영이사회가 보내온 총회직인사용(목회준비세미나 및 지방신대원 특별교육 수료증 발급) 요청의 건은 '총회 총무 입회하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토록 가결하다.
- ⑨ 총회 목회대학원 관련의 건으로 ㉗ 김선규 목사가 보내온 목대원 교무처장 해임 청원, ㉘ 총회 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가 보내온 총회 공문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보류토록 가결하다.
- ⑩ 총회는급재단에서 요청한 임원(이사 정년) 추천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토록 가결하다.
- ⑪ 울산남교회 대표자 확인의 소 항소(2018나2002941,서울고법, 항소인 최규돈 목사)의 건은 당사자에게 위임하도록 가결하다.
- ⑫ 허활민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소(원 결정: 원고측인 허활민 목사 소 기 각)의 건은 대응기로 가결하다.
- ⑬ CBS 파송이사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께 일임기로 가결하다.
- ⑭ CTS 파송이사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께 일임기로 가결하다.
- ⑮ 산서노회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⑯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가 요청한 회원자격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법대로 답변하도록 가결하다.
- ⑰ 전 회의록 7번 삼산노회 건은 기존 해 노회 화해조정위원회에 화해 및 조정에 대하여 전권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 ⑱ 경상노회 관련 소위원회가 경상노회 양측을 만나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계속 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하니 소위원회에 최종 맡겨 처리하되 노회 행정 일시정지까지도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⑲ 기독교신문 이사장과 주필, 편집국장이 출석하여 1월 9일자 사설에 대하여 사과하다. 이어 90회 총회 시 약속한 3억 원 지급을 요청하니, 서기, 회계, 장로 부총회장에게 맡겨 살펴본 후 다루도록 가결하다.
- ⑳ 총무가 직원 인사 건을 보고하니, 업무규정개정관련 소위원회와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되 총회장 결재 후 시행토록 가결하다.
- ㉑ 총신 정상화를 위한 제비용(소송비 포함)은 일단 총회 경상비에서 추경하여 사용하되 회계 부에서 담당하기로 하다.

(17) 제1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2. 21(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16차 임원회 유안건인 총회목회대학원 관련의 건으로 ㉗ 김선규 목사의 목회대학원 교무처장 해임의 건은 목회대학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답변키로 하고, ㉘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의 목회대학원장에 대한 총회공문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101회 총회결의에 따라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목회대학원 원장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③ 서기가 제55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2018년 5월 8일~10일, 충현교회당에서 개최됨을 보고 하니, 준비를 서기와 회록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④ 총회장상포상위원회에서 청원한 총회장상 포상을 위한 예산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이첩토록 가결하다.

- ⑤ 수원, 부산, 칼빈신학교, 지방신학원협의회와 남부산동, 남부산남, 부산, 중부산, 동부산, 수원, 남수원노회에서 요청한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허가 및 차후 총회신학원 운영 요청의 건은 조금더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회의 시 유안건으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⑥ 임강상 장로가 제출한 상소장은 제102회 총회에서 환부했던 것으로, 제15차 회의 시 동대전노회가 분립되어 환부받을 노회가 없으므로 총회로 재제출토록 하였던 건이므로 절차에 따라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상설재판비용을 총회에서 부담해줄 것을 청원한 것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토록 가결하다.
- ⑦ 경평노회 음두진 목사가 제출한 영동중앙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한 질의 및 시정 요청의 건은 해 노회로 환원하여 처리기로 가결하다.
- ⑧ 중부노회 관련 소위원회의 보고는 유인물(㉞ 제102회 총회시 환부된 건은 노회장 측에 환부하여 필요시 다시 재판하게 한다. ㉟ 중부노회 노회장 측의 행정 증지를 해제한다. ㊱ 이택규 씨의 김진수 씨 외 8명에 대한 상소장은 노회에서 판결이 없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⑨ 경상노회 관련 소위원회의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고 수습안대로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⑩ 서기가 총회임원수련회 준비 진행상황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⑪ 총회장이 한성노회 현황을 설명하고 서기가 전주남 목사가 청원한 한성노회 대표자증명서(전주남 목사), 목양교회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를 총회장과 상의 후 2018년 2월 20일자로 발급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⑫ 동광주노회에서 청원한 전 총회직원 황규철 씨에 의한 피해보상 청원의 건은 회계, 부회계, 총무에게 맡겨 연구하여 차기회의 시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⑬ 경남노회 박주현 목사가 제기한 노회판결무효확인 소(2018가합10193, 창원지방법원)는 경남노회에 위임토록 가결하다.
- 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보내온 기독교신문사에서 퇴직한 이길환 씨의 퇴직금 관련 금품 지급지시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총무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⑮ 서기가 총신대학교 관련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하니 구두보고로 받기로 하고, 총신 정상화를 위해 각 노회와 교회 등에서 보내온 분담금과 후원금 등은 회계부에서 관리하기로 하다.
- ⑯ 총회임원회 시 언론인 기자 동석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결과는 서기단에 맡겨 상세히 브리핑하도록 가결하다.
- ⑰ 차기 회의는 2018년 3월 16일(금) 오전10시30분,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 (18) 제1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3. 16(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수원, 부산, 칼빈, 서울신학교와 남부산동, 남부산남, 부산, 중부산, 동부산, 수원, 남수원, 용인노회에서 청원한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허가 및 차후 총회신학원 운영 요청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맡겨 지방신대원(칼신, 대신, 광신)에 이관하여 교육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추진토록 가결하다.
- ③ 구 개혁측 노회 지역경계의 건은 계속 연구 검토기로 가결하다.
- ④ 기독교신문사 3억원의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⑤ 서기가 제55회 목사장로기도회 준비현황을 보고하니 중간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⑥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청원한 총신운영이사회 주최 목회준비세미나 및 지방신대원 특별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강도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지 시행 청원의 건은 서기가 고시부에 잘 설명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⑦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요청한 총신 비상사태에 대한 전국 노회 결의문 시행 채택의 건은 주요 3가지 결의사항 중심으로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⑧ PCA총회 및 브라질장로교회 총회 초청 및 사역교류 협약(MOU) 체결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겨 추진토록 가결하다.
- ⑨ 세계예수교장로회의 제42회 총회 초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겨 추진토록 가결하다.
- ⑩ 제102회 총회시 총회임원회에 맡겨 심사토록 한 WRF 가입의 건은 여성안수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바, 신학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입기로 가결하다.
- ⑪ 현의부가 재질의한 각종 청원 및 소장을 현의부로 이첩요구의 건은 지난 16차 임원회에서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했던 것이므로 다시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⑫ 산서노회가 보내온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원의 건과 주신교회 당회장 허활민 씨의 소원의 건은 제16차 회의시 기각하였던 것이므로 다시 기각하고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 ⑬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가 업무지원 요청한 제102회 총회결의 확인요청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하고, 추후 법적다툼 시 비용부담 요청은 아직 발생치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고, 기독교신문 광고는 기사로 대신토록 가결하다.
- ⑭ 경남동노회 김수중 장로 외 4명이 청원한 경남동노회 총회결의 이행의 건은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종료기로 하다.
- ⑮ 전서노회 고창성복교회 관련 제102회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와 관련하여 전서노회에서 보내온 총회임원회의 환부지시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총회결의에 의거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⑯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요청한 만경교회 순교역사기념관 건립 지원 청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건은 재정부로 이첩기로 가결하다.
- ⑰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청원한 목회대학원 교무처장에 관한 건은 보고는 받고, 목회대학원 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제17차 임원회 결의대로 답변기로 가결하다.
- ⑱ 총회총무가 건의한 총회본부 문서접수 시행지침의 건은 더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 ⑲ 통합전산(ERP) 시스템 구축의 건은 목사부총회장, 부회계, 총무에게 맡겨 진행토록 가결하다.
- ⑳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조정위원 3인(부서기, 부회록서기, 회계)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㉑ 업무규정개정소위원회에서 총무에 대한 3가지 안을 보고하니 총회장에게 맡겨 지도하기로 하다.

### (19) 제19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5(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55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순서자 선정건은 서기, 회록서기에게 맡기기로 하고, 목회자납세문 제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제55회 목사장로기도회 시 종교인과세 관련 특별공적자(김진표 국회의원) 총회장 감사패 수여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③ 경상노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노회장 측과 부노회장 측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

- 고, 화합과 중재안 수행 조건 충족 시까지 사고노회로 행정중지 상태를 지속하기로 하되 화합 및 수습을 위한 노회장의 회의 소집 권한만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하다(정기노회는 할 수 없음).
- ④ 중부노회가 보고한 제102회 총회 시 환부된 건에 대한 노회결의 보고와 제55회 중부노회 정기노회 시 해노회 행위로 제명한 회원의 전산정보 변경 요청의 건과 최규식 목사 외 62인이 제출한 2건의 진정서를 심의하니 중부노회가 제102회 총회에서 노회에서 재판하도록 환부한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행정을 중지키로 하고, 중부노회 화해중재를 위한 소위원회 3인(장로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을 선정하여 조정토록 가결하다.
  - ⑤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와 장학재단설립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위원 보선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⑥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에서 청원한 자문위원 위촉 및 예산증액 요청의 건은 유지재단으로 이첩키로 가결하다.
  - ⑦ 호주노회가 제102회 총회 시 호주노회 가입이 통과되었으나 비총신 출신의 가입절차(총신교육 및 강도사고시) 미결정, 상회비 납부 및 총대 파송의 어려움 등을 들어 총회가입 철회를 요청한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⑧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의 제42회 미주총회 친선사절단 초청의 건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제20회 총회 초청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추진토록 가결하다.
  - ⑨ 제102회 헌의부 임원회가 총회임원회 결의를 통한 지시사항을 2번이나 따르지 않고 관련 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한 건은 총회규칙과 제102회 총회결의사항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헌의부장에게는 엄중 경고 공문을 보내고 재판국에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을 공문 발송하기로 가결하다.
  - ⑩ 총신운영이사회가 청원한 총회실행위원회 소집의 건은 강도사고시 시행에 대하여 제1,2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대로 시행토록 고시부에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또한 총회장, 서기가 고시부 임원들과 대화토록 하되, 만약 고시부가 이를 거부할 시 본부의 행정지원 및 재정지출을 중지토록 하고 2018년 4월 20일 오후1시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신운영이사회가 청원한 안전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거부자 이의성 외 175명 일동이 보낸 질의 및 청원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⑪ 헌의부가 요청한 헌의부 실행위원회 방해자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⑫ 한성노회 관련 조정위원회의 중간 보고(구두)는 받고, 목양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귀속할 시 제증명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과 합의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시 노회의 행정정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 ⑬ 차기 임원회는 4월 20일 오전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 (20) 제20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20(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전도부에서 제출한 산하속회 지도에 대한 답변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법대로 하도록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③ 동서울노회에서 질의한 목사자격 부여에 대한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④ 한성노회와 관련하여 전주남 목사가 요청한 최광영 목사에 대한 조사처리 요청의 건과 김성경





목사에 대한 해충회행위 조사처리 요청의 건은 감사부에 맡겨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서상국 목사 측에서 요청한 노회대표자확인 및 서류 발급신청의 건은 감사부에게 한성노회에 관한 일을 조사토록 하였으므로 감사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⑤ 대구수성노회, 서대전노회, 평양제일노회에서 요청한 정이철 목사(바른믿음) 신학사상 조사 및 긴급처리의 건은 신학부와 이단대책위원회로 보내 신속히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⑥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에서 질의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대한 건은 변호사 선임은 허락하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재정부로 이첩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가결하다.
- ⑦ 우종대 목사가 청원한 은행제출용 서류 발급은 제11차 임원회 시 은행제출용에 한하여 발급한 것에 근거하여 발급해 주기로 하고, 제102회 총회시 기각된 상소 및 소원에 대한 탄원의 건은 제19차 임원회 결의대로 하되, 서기, 회록서기에게 맡겨 대화토록 가결하다.
- ⑧ 용천노회에서 삼광교회 관련 상소장에 대한 질의 및 청원의 건은 용천노회 관련 기 접수된 상소건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함으로 재판국에 기각토록 문건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⑨ 서기가 실행위원회 회의자료를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하다.

### (21) 제2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4. 24(화) 12:00

☞ 장 소 : 인천공항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회록서기가 제3차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③ 동서울노회 남서울전원교회 장훈길 성도 외 2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는 현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전서노회 고창성복교회 이승만 장로가 제출한 상소장은 보류하되, 서기가 경과를 전화로 설명하고 차기 회의시 논의키로 가결하다.
- ⑤ 총회장이 총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화경 목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와 시위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상황을 설명하니 총회임원의 직무수행 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제100회 임원회 결의에 의거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 ⑥ 서기가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원회 조치 요청 사항(1차)을 보고하니
  - 가. 제1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거, 용역을 동원한 재단이사(하귀호, 김남용, 곽효근, 박노섭, 주진만)들과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하여 해노회에 권징절차에 따라 면직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나. 만약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이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 한하여 노회로 하여금 징계하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 다. 새롭게 보직을 맡았거나 계속 보직을 맡아 온 교수와 직원(함영용, 한천설, 신현우, 윤종훈, 이상일, 장은일)들에 대해 강력히 징계(목사는 면직토록 하고, 교인은 총신대 제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도록 일체의 직위를 박탈)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라. 김영우에 부여한 직원(김성곤, 박만규)에 대하여 해 당회에서 교인지위를 박탈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마.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제103회 총회장이 되면 총신대 문제 상황 등을 다 바꿀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하는 자(목사, 교수, 직원, 학생 등)가 적발될 때에도 해노회(당회)

에서 엄중 징계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바. 이 외 교육부 처분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보직을 맡아서 김영우에 부여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위 결의 내역에 대하여 해 노회에 강력한 지시공문을 신속하게 하달하기로 하다.

## (22) 제22차 임원회

☞ 일 시 : 2018. 5. 8(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장로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당사자, 노회 등과 대화토록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③ 서기가 금번 목사장로기도회에 총신대 학부생, 신대원생, 교수들이 수요일 저녁집회에 찬양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고, 총무가 농아인선교회에서 일정동안 수화 통역으로 섬기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각각 사례하기로 가결하다.
- ④ 목사장로기도회의 헌금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화순전원교회, 함평진양교회, 초이화평교회, 청송화정교회)를 배분하여 돕고, 농아인선교회, 총신대공동체(저녁집회 찬양), 작은음악회 사례비를 선교적 차원에서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 ⑤ 경남동노회 문동현 목사가 경남동노회의 행정중지를 요청한 건은 해 노회로 보내 그 사유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⑥ 경북노회 김한국 목사가 질의한 총회 재판계류 중에 있는 건에 대한 노회의 재판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 노회로 보내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⑦ 총회목회대학원이 보고한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 구성 및 교무처장 해임에 관한 보고의 건은 법적 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⑧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요청한 사단법인 이사 추천 및 이사회비 분담금 요청의 건은 이사로 목사부총회장을 추천하고 이사회비는 분담하기로 가결하다.
- ⑨ 현의부에서 청원한 특별감사요청(서기, 기독교신문기자)의 건과 동안주노회에서 청원한 특별감사요청의 건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⑩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와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요청하여 징계기로 한 법인이사, 교수, 직원 외에 추가로 해총회행위가 확인된 인사(교수, 직원 등)에 대한 징계요청에 대하여는 총회장과 서기단에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⑪ 서기가 총회장, 서기, 고시부 임원과의 연석회의 결과, 고시부에서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르기 위하여 고시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한 후 진행키로 하였음을 보고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추후 공문으로 요청할 시 답변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⑫ 개방이사 추천위원 보선의 건은 기존 3인의 임기(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신임 위원선임은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⑬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가 요청한 한성노회 소속, 대표자, 직인증명서 발급 요청의 건은 지난번 대표증명서 발급한 연장선에서 서류를 발급하되 목양교회는 교단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재산에 관한 법원제출용으로 발급토록 가결하다.
- ⑭ 총회에 협조 중에 있는 총신대 법인이사(4명)에게도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의거 사임서를 제출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⑮ 제21차 임원회 결의에 대한 기독교신문의 기사내용 중 총신대 임시이사 파송을 반대하는 듯한 내용은 오보였으며, 총회임원회는 교육부의 처분을 환영하고, 임시이사 파송이 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기독교신문에 보도키로 가결하다.
- ⑯ 제21차 임원회시 결의한 “목사부총회장이 제103회 총회장이 되면 총신대 문제 상황 등을 다 바꿀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하는 자(목사,교수,직원,학생 등)가 적발될 때에는 해 노회(당회)에서 엄중 징계토록 지시하기로” 결의한 바, 이에 대한 조사처리위원 3인을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 (23) 제23차 임원회

☞ 일 시 : 2018. 6. 1(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고시부에서 요청한 2018년도 일반강도사고시 시행관련 확인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2,3차 총회실행위원회(2018.1.4., 2018.4.20.) 결의에 의거 향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총회 내의 헌법적 충돌이 있을 경우 총회(총회임원회)에서 대응해 주는 것을 확인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③ 서장국 목사가 제출한 ‘전주남 목사 측 발급서류 취소 및 발급중지 요청의 건’과 ‘전주남 목사 측 대표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류에 하자가 있으므로 반려하기로 하고, 전주남 목사가 보고한 사회법정 소송 결정문은 보고로 받고, 목양교회의 대표자증명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제22차 임원회 결의대로 발급하되, 목양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시킨다는 확인서(전주남 목사와 목양교회 당회)를 받은 후 발급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④ 평중노회에서 질의한 시무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한 건은 헌법대로 처리하도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⑤ 충남노회에서 질의한 이중직에 대한 건은 서기로 하여금 규칙부로 보내 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⑥ 서평양노회 박창조 목사가 질의한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노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대로 하도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⑦ 평남노회 조청래 목사가 제출한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진정의 건은 평남노회에 총회결의대로 이행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⑧ 서기가 허활민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서울고법 2018라20110) 건이 ‘항고 기각’ 되었음과 직전 서기 서현수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한 건이 ‘죄가 안됨’으로 처리된 것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⑨ 서기가 남울산노회 울산남교회와 관련하여 대표자 확인의 소(서울지법, 2018나2002941)에 대하여는 양측이 화해조정소위원회(권순웅, 장재덕, 최수용)의 중재안에 합의하였음에도 (2018.4.10.) 불구하고 최규돈 목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18나 2002941 대표자 확인의 소)을 보고하니, 남울산노회에 맡겨 합의대로 속히 이행할 것과 대응 당사자에게 맡겨 소송에 대응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⑩ 총회세계선교회에서 질의한 GMS 노회파송이사 자격에 대한 건은 총회규칙대로 시행토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⑪ 서기가 총신대 관련 결의사항 이행경과와 법적대응 경과를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관서노회에서 질의한 총신대 감사 주진만 목사의 징계지시에 대한 건은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어 답

- 변해 주되, 추후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노회가 대응토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⑫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요청한 상호 협약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⑬ 전도부가 보고한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운영(실무자 정년초과 등)에 대한 전도부의 지도 결과 및 추후대책에 대한 보고는 지난 임원회 결의대로(법대로) 전도부에서 시행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⑭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장로가 제출한 상소장은 서기가 한 번 더 양 입장을 들어 합의하여 취하도록 권면하되, 안될 시 헌의부로 이첩키로 하고, 제102회 총회 환부결의 통보 조작여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사실대로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⑮ 충남노회에서 요청한 아산사랑의교회 전도부 배너를 총회홈페이지에 연동 요청의 건은 총회홈페이지에는 산하기관 외 일절 배너를 허락하지 않기로 하되, 향후 연구해 보기로 가결하다.
- ⑯ 총무가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를 방문 시 김혜성 목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약 1만2천여 명의 공한지를 총회가 목적사업에 사용할 시 기증해 주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총회장, 회록서기, 총무에게 맡겨 연구하되 차기 회의 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⑰ 서기가 박무용 목사의 총회장직무 관련 피소 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총회에서 법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하니, 직무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여 선별하여 지원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⑱ 제103회 총회 준비위원 선임은 이승희 부총회장에게 일임하여 그 명단을 서기에게 주고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⑲ 중부노회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니, 조금 더 화해를 종용키로 가결하다.

#### (24) 제2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6. 22(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서기가 제23차 회의 시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장로의 상소의 건에 대한 양 입장을 들어 합의하여 취하도록 권면하기로 한 건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을 보고하니 이승만 장로의 상소장과 질의서를 해노회로 보내 답변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③ 남서울노회가 제출한 교단탈퇴 후 재가입 시 직전노회 가입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원노회로 가입토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④ 대구수성노회에서 요청한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 재직 시 직무수행에 관한 일들에 대한 모사설언론의 편파적 보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총회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요청한 건은 제23차 임원회 시 총회장 직무와 관련한 건을 선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 ⑤ 양원 장로 외 4인의 정원에 대한 경남동노회의 보고를 받고, 양원 장로에게 노회의 답변대로 '문제 없음'을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⑥ 전도부에서 요청한 총회기간 중 전도부 주관 수요예배로 드리도록 요청한 건은 제103회 총회 준비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⑦ 여성사역자치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에서 청원한 재정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⑧ 재단이사 6인(문찬수,곽효근,김남웅,하귀호,박재선,임흥수)이 총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총회지시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8카합20813) 대응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 ⑨ 총신대학교대학평의원회에서 요청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임 요청의 건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요청한 개방감사 3인 추천의 건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 ⑩ 기독교신문사에서 요청한 광고비 선불 및 지원금 요청의 건은 현재 총회재원이 없으므로 재정부추경지원금 요청의 건은 지원 취소하고, 이를 유지재단에서 2억원을 대여해 총회본부의 광고비 지급(년간 약 1억 8천만원 집행실적 감안)시 50%씩 차감하여 약 2년간 상환토록 하고 재정부에서는 일정금액이 모일 시 유지재단으로 입금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⑪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요청한 본 교단의 한기총 복귀 요청의 건은 제101회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긴 건을 제101회 총회임원회에서 “한기총 가입은 하지 않기로 하고 한교총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고, 현 임원회에는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더 연구하여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⑫ 장로의 친목단체인 한국장로회연합회에서 본 교단 분담금으로 500만원 요청한 건은 전례가 없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⑬ 경상노회 방동희 목사 측에서 요청한 경상노회 행정정지에 대한 문의 요청의 건은 소위원회에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⑭ 김중선 목사가 제기한 노회소속증명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의 소 판결 무효확인 소 대응의 건(서울지법 2018거협3231)은 해노회로 하여금 대응토록 가결하다.
- ⑮ 총회세계선교회가 질의한 하귀호 목사 GMS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의 건은 총회총대가 아니며(산하기관 이사는 총회총대여야 함) 총신재단이사 중 한 사람으로서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불가함을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⑯ 미국 LA에 거주하는 김혜성목사가 LA에 있는 개인소유지 중 12000평을 본 총회에 기증한다는 건은 총회유지재단으로 보내 국제법과 세무관계법을 알아보고 기증반도록 가결하다.
- ⑰ 본 교단 총회임원들과 통합측 임원 연석회의를 6월 29일(금) 오후5:30, 팔래스호텔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 ⑱ 납골당조사처리위원장 장재덕 목사가 지난 임원회 결의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변호사자문료가 한 변호사당 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자문료 관제로 보류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⑲ 총신대 현안문제를 법적으로 더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학법에 대하여 잘 아는 변호사를 선정하기로 하여 고문변호사로 임성규 변호사, 자문변호사로 홍정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 ⑳ 총회장이 중부노회의 행정정지 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중부노회소위원회가 속히 조정 해결하도록 가결하다.
- 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가 제출한 한기총 선거에 개입하여 금품수수했다는 본교단 소속인사에 대한 고발 건은 한기총에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지만 본교단 인사인 점을 감안하여 총회장에게 맡겨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25) 제2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7. 17(화) 13:30

☞ 장 소 : 엠버서더호텔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3회 총회 공천위원회는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1시에 대전중앙교회당에서 갖기로 하고, 총무에게 맡겨 해 교회에 장소사용을 의뢰하기로 하다.
- ③ 세계개혁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제103회 총회 시 초청할 해외교단으로 멕시코민족장로교회, 페루복음개혁신장로교단, 미국장로교회, 브라질장로교회, 세계개혁교회연맹,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④ 조청래 목사 관련 제102회 총회판결대로 이행토록 지시한 건에 대한 평남노회의 답변의 건은 제102회 총회 시 감사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 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소원은 불가능한 바(권징조례 제84조), 평남노회에 총회 결의대로 이행하도록 다시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⑤ 중부노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양측 화해를 위한 위원회 활동경과와 총회장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을 보고하니, 한준택 목사 측의 재판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노회장 측에는 행정중지를 풀되, 총회장이 지시한대로 모든 시벌은 원인무효로 해별하고 이명이적을 원하는 교회와 목사에게는 이명서와 이적서를 발급해주시기로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103회 총회총대 전서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 ⑥ 경북노회에서 보고한 김한국 씨의 질의에 대한 사실결과 및 입장의 건과 김한국 목사의 우봉석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건의 결과(합의결과)를 확인하여 양측에 통보하기로 하다.
- ⑦ 전남제일노회 잔류측 이준행 목사가 제출한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위원장 직위 남용 및 직무유기 조사처리 요청의 건은 두노회 합병위원회에서 양 노회의 합병을 완료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였으므로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는 합병된 것으로 인정하고, 합병위원장 개인에 대한 요청 건은 감사부에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⑧ 경남동노회에서 요청한 서부산노회의 새생명교회(문동현 목사) 이명이적 거부에 대한 법적 해석 요청의 건은 법대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⑨ 경상노회관련 소위원회에서 경상노회 양측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고하니, 소위원회에 계속 맡겨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가결하다.
- ⑩ 전남노회에서 질의한 총회총대 선거(투표방법)에 관한 질의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서기가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⑪ 3.1운동100주년기념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한 김혜성 박사 3.1운동 관련 문서 요청의 건은 이 일을 추진해온 총회장, 총무, 회록서기에게 맡겨 기증받아오도록 가결하다.
- ⑫ 총회유지재단에서 요청한 서홍종 목사의 사임에 따른 추천 요청의 건과 총회은급재단에서 요청한 김문갑 목사와 김영진 장로의 정년에 따른 결원 이사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⑬ 직원 업무용 차량 구입의 건은 구입하기로 가결하다.
- ⑭ 제23차 임원회의시 서평양노회 박창조 목사가 질의한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노회임원선거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노회규칙대로 하도록 답변한 건에 대한 서평양노회 소명의 건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대로 시행하도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⑮ 총신대 관련 관선이사가 파송될 시 많은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하여 총회장, 서기,



부회록서기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사실임을 지적하여 기독교신문 등에 보도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전해주도록 가결하다.

⑯ 감사부가 제출한 제102회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부정 등록자 처리의 건은 다음과 같이하기로 가결하다.

가. 감사부가 제출한 서류는 자구수정하여 다시 제출토록 한다.

나. 총대경력이 부족함에도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하여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황재열 목사는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숙하도록 통보하기로 한다.

다. 또한 결원된 선관위원 및 재판국원의 보선은 서기단에 맡겨 지역구도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한다.

⑰ 총회직원업무규정 소위원회회의 보고의 건은 다음 회의 시 다루기로 가결하다.

⑱ 다음 회의는 2018년 8월 8일(수) 오전10시30분에 하기로 가결하다.

### (26) 제2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8. 8(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금일 해당 감사부의 지난 보고에 대한 변경 추가 보고와 경일노회에서 제출한 호소문이 있어 함께 다루니, 전 회의록 ㉠㉡㉢항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감사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가.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전체위원은 제103회 시 엄중경고 및 사과토록 함.

나.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 중 신신우 장로와 이춘만 장로는 당사자도 모르게 후보로 추천하는 등 불법선거를 조장하였으므로 총회총대 1년 정직 시키기로 하고 천서 제한

다. 재판국원 전창덕 장로와 정진석 장로는 제103회기 총회총대 1년 정직 및 천서 제한

라. 허위서류를 보고한 경일노회에 대하여는 장로총대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엄중 문책하여 경고 및 제103회 정치부장으로 입후보한 김경수 목사는 상비부장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형언 장로(은누리교회)의 천서는 제한하고, 경일노회로 하여금 소속당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하고, 최무룡 장로는 제102회 선거관리위원 직을 자진 사임하였기에 경일노회와 같이 경고함.

② 평남노회가 제출한 제102회 총회판결 이행지시에 대한 보고 및 건의사항은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③ 고창성북교회 관련 이승만 장로가 제출한 내용증명서를 보고 받고, 23차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상소장은 현의부로 이첩하고, 질의서에 대하여는 답변해 주기로 하고, 전서노회가 제출한 총회본부 제102-102호 문서 관련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감사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④ 황동노회에서 요청한 제102회 총회 시 김상운 목사에 대한 결의 중 편목에 대하여 단 1회적으로 정회원 부여키로 한 제92회 총회결의를 “만”자를 넣어 잘못 인용하였으므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의 건은 제92회 총회 결의가 “가입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된 분”임을 확인한 바, 92회 총회결의대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대구노회에서 요청한 대구동노회 총회 총대권 중지 요청의 건은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⑥ 충청노회에서 청원한 수원교회 화재로 인한 재정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⑦ 중서울노회 신선호 장로가 제출한 중서울노회 서기 총신대 재단이사 및 금곡교회 안건 처리에 대한 소원장과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에 대한 상소장과 중서울노회에서 제출한 소원장, 상소장 반려 요청의 건은 노회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⑧ 전남제일노회 잔류 측 이준행 목사가 제출한 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합병 관련 건(8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⑨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총신비상사태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와 총신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의 건으로 총회실행위원회 소집을 청원하니 총신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의 건을 다룰 수 있는지 검토를 하여 법적 문제가 있으면 안건에서 삭제하고, 이슬람대책의 건(국가인권기본정책의 문제점, 난민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편향성의 문제점)도 함께 안건으로 상정하여 8월 30일(목) 오후1시30분, 대전중앙교회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 ⑩ 전남노회 김창희, 서만종 목사가 제출한 전남노회 총회 총대선출에 대한 소원장은 전남노회에 답변한 내용을 붙여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⑪ 한성노회 김성경 목사가 제출한 총회결의 준수 관련 질의의 건은 노회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⑫ 규칙부에서 보고한 충남노회 이증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받기로 가결하다.
- 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선거관리위원 보선의 건은 서기단에 맡겨 지역구도에 맞게 보선하기로 가결하다.
- ⑭ 경기중부노회에서 제출한 선관위원장 불법을 확인 후 즉시 교체 청원의 건은 감사부로 보내고, 제103회기 천서제한 청원의 건은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⑮ 제자교회 관련 당사자(정삼지 측)가 요청한 2018나2034399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35465 건 항소) 위임 요청의 건은 제98회 총회임원회에서 '제자교회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결의에 따라 위임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⑯ 충남노회 관련 박노섭 목사가 제기한 2018다248879 총회판결무효확인 소(2017나2004766 건 상고)는 당사자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⑰ 강변교회 관련 김창선 목사가 제기한 2018나2033532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2017가합37251 건 항소)는 당사자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⑱ 산정현교회 관련 김길태 목사가 제기한 2018가합540631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는 당사자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⑲ 경상노회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폐지를 청원하니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 ⑳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는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 ㉑ 제103회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청원한 보고서를 PDF 파일(USB 등)로 제공 요청의 건과 재정추경 및 앰블럼 제작 사용 건과 주제 선정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㉒ 군선교회와 군선교사회에서 청원한 제103회 총회 시 군선교사 임명장 수여 청원의 건은 종전대로 군목부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018.8.10. 답변 시행
- ㉓ 총신신대원 총동창회에서 청원한 총회와 총신의 화합을 위한 대표자 추천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㉔ 총회 회계가 제88회기 개역개정판 성경번역대책위원회에 성경 번역비로 3억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후 성경번역이 무산되면서 상환되지 않은 잔금(198,145,496원)을 결손 처리할 것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㉕ 기독교보(발행인 황규학)에서 본 교단 폼하기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통합측 총회에 지도요청하기로 가결하다. 2018.8.13. 통합측에 공문 시행





- ㉞ 총무가 3.1운동관련 자료를 기증 받기 위하여 LA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니, 실물은 제103회 총회에 김혜성 목사와 사모님을 초청하여 전달받기로 가결하다.
- ㉟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회의방해 시위 금지 시행 요청의 건은 제98회 총회에서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기로” 결의한 바, 총회임원회의를 포함하여 공격 회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공직을 정지하고 천서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 ㊱ 차기 임원회는 8월 30일(목) 12시에 대전중앙교회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27) 제2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8. 22(수)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 채택하기로 하다.
- ② 서기가 공천위원회 일정을 종전 2018년 8월 30일(목) 오전11시에서, 오전10시로 변경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③ 김제노회 만경교회 순교역사관 건립지원 재정청원의 건은 제102회 총회 시 재정부로 보냈던 것을 총회역사위원회로 보냈으므로,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제103회 총회에 청원하도록 가결하다.
- ④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하여 제출된 아래 문건은 감사부로 보내 확인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가. 전남제일노회에서 제출한 선관위원장의 불법을 확인 처리한 후 즉시 교체 청원의 건
  - 나. 전남노회에서 제출한 제103회 총회 부서기후보 등록자에 관한 질의의 건
  - 다. 전남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후보 허락에 관한 이의 제기의 건
  - 라. 함북노회에서 제출한 김영범 목사의 재판국장 후보 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재심 청구서
  - 마. 선관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장 담화문에 대한 진정
  - 바.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이형만 목사에 대한 고소장
  - 사.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정창수 목사, 김근택 장로에 대한 진정서
  - 아.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부서기 후보 탈락에 대한 재심청원
  - 자. 정순기 목사가 제출한 재판국원 출마자격 취소에 대한 재심청원
- ⑤ 감사 요청 건으로 전남제일노회에서 제출한 선관위원장의 불법을 확인 처리한 후 즉시 교체 요청의 건은 위 항에서 감사부로 보냈으며, 경기중부노회에서 제출한 제103회기 천서제한의 건은 천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천서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⑥ 삼산노회화해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함으로 임원회에서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로 판단해 주실 것을 보고하니, 보고는 받고, 삼산노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⑦ 서기가 경상노회 소위원회가 지난 회의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상노회에 대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니 천서검사위원회에 맡겨 면직된 15명을 해벌해주는 조건으로 노회의 행정정지를 풀고 제103회 총회총대를 천서해 주도록 가결하다.
- ⑧ 제103회 총회준비 관련으로 순천노회에서 제출한 환경 총회 개최를 위한 제안서는 총회준비위원회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청원한 제103회 총회해외교단 참석자 의견 계획 및 예산 청원은 총무와 총회준비위원회에 맡겨 진행하도록 가결하다.
- ⑨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02회 총회 수입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건은 동수원노회에 대한 지도 요청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천서위원회로 보내 제103회 총회 총대 천서에 반영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 ⑩ 경남동노회 양원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경남동노회 답변에 대한 이의서는 절차미비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⑪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요청한 라오스دم 붕괴사고 피해교회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 협조 요청의 건은 총회장 담화문을 통해 전국교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 ⑫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103회 총회 주제로 “변화하라, 민족의 희망으로(이사야 44:4)”로 선정함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수요일예배 준비상황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3) 경남동노회 관련 소위원회

####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0. 31(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경남동노회 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 ② 경남동노회 안정을 위해 a. 총회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성경선 목사의 서기직무는 한 회기동안 정지하도록 하고 b. 한 회기 동안 노회원(목사, 장로)에 대하여는 시벌하지 않고, 이명요청 시 원하는 노회로 이명해주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4) 산정현교회 관련 소위원회

####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0. 31(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장재덕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회계 최수용 장로
- ②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11시, 새로남교회에서 동대전중앙노회, 동대전제일노회 노회장과 서기를 불러 상황을 청취하고, 산정현교회(임시당회장, 시무장로)를 실사하고 정리 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1. 16(목) 11:00

☞ 장 소 : 대전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오전11시 동대전중앙노회 측과 면담하다.
- ② 오후1시 동대전제일노회 측과 면담하다.
- ③ 아래와 같이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가. 현황 : 산정현교회는 동대전제일노회 김길태 목사 측과 동대전중앙노회 임강상 장로 측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재산권 분쟁으로 사회법정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교인수는 김길태 목사측 16명과 임강상 장로 측 6명으로 추정된다. 산정현교회는 동대전노회에 속해 있었으나 2016년 4월 노회분립위원회가 동대전제일노회와 동대전중앙노회로 분립할



시 소속을 정해주지 못했다.

나. 의견 : 노회간의 다름이 많으니 무지역노회로 보내어 해결하는 방안, 교회 재산을 6:4로 분배하여(김길태 목사 측 6, 임강상 장로 측 4) 주는 방안

###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 4(목) 15: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동대전중앙노회 측에 위원회 합의안을 제안하다.
- ② 동대전제일노회 측에 위원회 합의안을 제안하다.
- ③ 양 측 입장이 달라 합의안 채택이 어려운 바, 제102회 총회 시 임강상 장로의 상소 건을 환부키로 하였으나 원노회가 분립됨에 따라 소속노회가 없어 노회에서 재판할 수 없으므로 총회재판국에 다시 제출하여 판결을 받도록 차기 임원회에 보고키로 하다.

### 5) 중부노회 관련 제1차 소위원회

####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1. 3(금)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권순용 목사, 서기 진용훈 목사, 위원 서기영 장로
- ② 중부노회 소속교회 민원서류 발급은 위원장께 위임하여 발급키로 하다.

####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1. 14(화) 15: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양측에 대해 절차상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자료화 하도록 하다.
- ② 차기회의는 추후 일정을 잡아 양측 대표자 각 3인씩을 불러 의견 청취 및 지도키로 하다.

####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2. 11(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중부노회 노회장 측과 면담하다.

#### (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2. 14(목)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한준택 목사 측과 면담하다.

##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 31(수)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노회장 측에 제안할 내용을 논의하고 노회장 측과 면담하다.

## (6)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2. 21(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7차 총회임원회 유인물대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6) 중부노회 관련 제2차 소위원회

##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4. 5(목) 13:2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최수용 장로, 서기 서기영 장로, 위원 진용훈 목사
- ② 다음 회의는 추후 통보하기로 하다.
- ③ 노회장 측, 서기 측 모두 총회관련 제증명 발급을 중지하기로 하다.
- ④ 모든 노회 회집도 중지하되, 화합 및 수습을 위한 소집은 허락하기로 하다.

##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4. 23(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노회장 측(노회장 김용제 목사, 부노회장, 이덕주 목사, 회의록서기 박동규 목사, 증경노회장 박봉규 목사 참석)에서는 서로 행복한 목회를 위하여 노회를 소집하여 면직, 제명을 원인무효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③ 한준택 목사 측(최규식 목사, 최용진 목사, 이택규 목사 참석)에서는 제명 19명, 면직 1명 등의 징계를 원인무효하면 노회소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④ 행정정지 기간동안에는 중부노회의 조사처리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5. 9(수) 14:00

☞ 장 소 : 충현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화합 조정을 위해 양측 모두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한준택 목사 측만 참석하다.



- ③ 노회장 측에서는 목회를 막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내용증명등을 보내서 목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결의하다.
- ④ 다음회의는 5월 18일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가결하다.

(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1(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노회장 측의 과도한 합의조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노회장 측 목사님과 관련된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화해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다.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22(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중부노회의 원활한 화해를 위하여 신규식 목사가 양측을 합의할 수 있도록 아래의 화해조정 조건대로 2018. 7. 3.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가. 화해 조정 조건

- a. 행정 중지를 해제하기로 한다.
- b. 행정 중지 중 행사 등 행정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c. 면직, 제명 등 치리된 목사들을 원인 무효하기로 한다.

(6)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28(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 재판에 따라 총회의 지시에 순응하겠다는 이택규 목사의 확인서를 받다.
- ② 총회장님 참석하여 서기 측 참여하신 분들과 경건회를 갖고 총회장님의 기도로 마치다.
- ③ 차기 회의는 양측의 화해 조정을 위하여 2018. 7. 4.(수)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7) 울산남교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 12. 20(수) 13:00

☞ 장 소 :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권순웅 목사, 서기 장재덕 목사, 회계 최수용 장로
- ② 남송현 목사로부터 교회 및 노회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다.
- ③ 최규돈 목사 측 장로 3인을 12월 27일(수) 오후 3시에 출석 요청토록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7. 12. 27(수) 15: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최규돈 목사 측 답변을 듣다.
  - ② 차후 실사하기로 가결하다.

**8) 경상노회 관련 소위원회****(1) 제1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8. 1. 17(수) 18: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이대봉 장로, 총무 장재덕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 ② 차기 회의는 2018년 1월 26일(금) 오전10시40분, 창원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갖기로 하고 방동회 목사 측은 오전11시, 노회장 측은 오후3시에 출석토록 하여 상황을 확인하기로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8. 1. 26(금) 10:40
- ☞ 장 소 : 창원인터내셔널호텔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오전11시 부노회장 방동회 목사 측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 ③ 오후 2시30분, 노회장 측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서기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다.

**(3) 제3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8. 1. 31(수) 13: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양 측 화합을 위해 더 조정하기로 하다.  
가. 김성도 노회장 측 자료를 검토하다.  
나. 행정 일시 정지 공문은 더 조율해 보고 진행하기로 하다.

**(4) 제4차 소위원회**

- ☞ 일 시 : 2018. 2. 12(월) 15:00
-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경상노회 분규 상황파악에 대한 정리 후 수습안을 정리하다.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3. 24(토) 15:00

☞ 장 소 : 반야월교회당

☞ 결의사항

① 임원회 결의사항을 확인하다.(공문)

② 행정 정지 지도하기로 하다.

가. 전제 조건없이 하나되게 한다.

나.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 정리해서 마무리한다.

다. 위 가.,나. 내용을 받지 않을 시 행정중지로 인한 사고노회임을 확인하고 제103회 총회 전 서제한과 노회로부터 올라오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기로 한다.

(6)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3. 26(월) 15: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결의사항

① 양측 임원 참석자를 확인하다.

김성도(노회장), 이창표(장로부노회장), 이원평(서기), 김성곤(회록서기), 양충만(부회록서기), 정용균(회계), 백민기(부회계), 방동희(부노회장), 이현철(부서기)

②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불허하고 녹음 시 불이익을 준다고 공지후 양측이 이에 동의하다.

③ 3월 24일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공지한 후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다.

김성도 노회장 측과 방동희 부노회장 측을 따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김성도 노회장에게 중재권을 주어 양측을 조율 후 4월3일까지 결과를 보고하고 원만히 합의가 안될 시 4월5일 임원회에 보고 후 사고노회로 처리한다.

(7) 제7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13(수) 11:00

☞ 장 소 : 대구인터볼고호텔

☞ 결의사항

① 오전 11시, 부노회장 방동희 목사와 면담하여 권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다.

가. 소위원회 : 현 상황 및 향후 과정 등을 설명하고 상생을 위한 화해 합의(향후 이명 또는 분립)를 권고하다.

나. 방동희 목사 : 조건없는 법적절차(사법, 행정 등) 해제와 종전 임원 인정 및 부임원 안배해 줄 것을 요구하다(본인은 부노회장으로).

다. 소위원회 : 조건없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임원선출(투표)할 것을 권고하다.

라. 방동희 목사 : 양측에 임원을 안배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소위원회 결정에 승복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다.

② 오후 12시, 노회장 김성도 목사 외 1인과 면담하여 권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다.

가. 소위원회 : 방동희 목사 측과 동일하게 권고하다.

나. 김성도 목사 외 1인 : a. 방동희 목사 측 의견을 받아 하나 되게 하되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각서 공증 후 적절한 시기에 해별 및 이명 요청 시 허락할 의사가 있으며, 분립 의사도 있음을 표명하다. b. 사법부 가치분 인용건 소송비용 1/2 부담하게 할 것을 요구하다(판

결은 2/3 부담).

- ③ 다음주 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공문으로 양측에 통보하기로 하다.

#### (8) 제8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22(금)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최종 권고안을 양측에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가. 경상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총회임원소위원회 중재안에 의거 7/3 까지 조건없이 합의한다.

a. 쌍방 사과문 및 재발 방지 제반 내용을 위한 합의 각서를 작성 및 공증하고, 사회법정 제소분에 대해 취하(소송비용 실비 각 1/2 부담)를 한다.

b. 합의문에 노회분립 및 이명을 요청 시 조건없이 쌍방 승인한다.

c. 상기 조건이 성립될 시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총회 총대 선출(헌법 절차대로) 및 보고 하고 행정중지 해제 요청을 한다.

나. 상기 사항을 7/5까지 완료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총대 천서 최종 보고 시한(7/10까지)

다. 이는 총회임원소위원회의 경상노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중재안임을 참고하시고 노회의 화합과 회복, 성장을 기도합니다.

#### (9) 제9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29(금)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경상노회 양측에 소위원회가 면담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간에 화해 조정하여 안을 올리면 임원회에서 돕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다.

#### (10) 제10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7. 11(수) 10:00

☞ 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

☞ 결의사항

- ① 7월 17일(화)까지 양측이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을 총회임원회의 (7/17화)에 종결 보고하기로 하다.

### 9) 업무규정개정 관련 소위원회

####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 31(수)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업무규정 토의한 후 인사를 총무에게 맡겨 총회장 보고 후 시행키로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2. 21(수) 14:4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장재덕 목사가 출석 후 이석하므로(개인사정) 임시서기로 김종혁 목사가 회의록 작성토록 하다.
- ②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총회본부 보직 인사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다.
- ④ 업무규정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승진 건을 별지와 같이 결의하다.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22(금)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업무규정 개정안 검토하다.

10) 한성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3. 16(금) 14:0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종혁 목사, 서기 진용훈 목사, 회계 서기영 장로
- ② 양측의 상황을 듣고 조정하기로 하다.  
일시 4월 2일(월) 오전10시30분 위원회 모임, 오전11시 서상국 목사 측(목사2인, 장로1인),  
오후 1시 전주남 목사 측(목사2인, 장로1인)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4. 2(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상국 목사 측(서상국, 김성경, 이춘봉)과 면담하다.
- ② 전주남 목사 측(전주남, 윤병철, 이만석)과 면담하다.
- ③ 화해 모임을 4월 5일 오후2시에 모이기로 하다.

11) 경기북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6. 21(목)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 위원장 장재덕 목사, 서기 서기영 장로, 총무 최수용 장로
- ② 경기북노회 분립위원회 분립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경기북노회 측에서는 최형화 목사를, 가칭 북경기노회 측에서는 이찬영 목사를 대표로 선정하여 자구 수정없이 시행하기로 합의하다.
  - ③ 경기북노회 분립위원회 분립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측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총회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기로 합의하되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기북노회 분립위원회 분립안을 첨부하여 공증하기로 하다.
  - ④ 2018년 7월 3일까지 양측이 합의하고 경기북노회 분립위원회 분립안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로 합의하다.

##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7. 3(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측은 경기북노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다.
- ② 양측이 만나 조직 보고 및 총대 보고를 총회임원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던 분립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 ③ 양측이 보고한 총대 보고와 조직 보고에 이의가 있어 정리하기로 하다.

## 12) 삼산노회 화해조정위원회

###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2. 2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강태구 목사, 서기 정계규 목사, 회계 최병철 장로
- ② 삼산노회의 현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다(제101회 총회임원회, 제102회 총회, 제102회 총회임원회 결의사항).
- ③ 차기 회의는 2018년 1월 9일(화) 오후2시와 4시에 양측을 출석토록 하여 갖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 9(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류형욱 목사 측 3인을 오후 2시부터 면담하여, 그 입장을 청취하다.  
가. 2018년 4월 정기노회 때 양측의 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삼산노회 정회원들만으로 임원조직을 화해조정위원들의 입회 하에 다시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청취함  
나. 노회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노회 분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청취함  
다. 삼산노회의 행정상태에 대한 총회임원회의의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청취함
- ③ 장기호 목사(노회장) 측 2인을 오후 3시부터 면담하여, 그 입장을 청취하다.



이탈측이 노회 앞에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하면 원만하게 노회를 수습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청취함

- ④ 총회임원회에 삼산노회의 행정상태와 본 위원회의 조정 권한에 대한 질의서를 올리기로 하다.
- ⑤ 연말정산에 관한 서류발급을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 30(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임원회에 올린 청원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음을 확인하다.
- ③ 답변 후에 차기 회의를 갖기로 하다.

###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2. 13(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임원회로부터 삼산노회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답변이 왔음을 확인하다.
- ③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다.
- ④ 양측을 3월 2일(금)에 각각 불러서 조정을 시도하되, 류형옥 측은 오전 10시30분, 장기호 측은 오후 1시 30분에 부르기로 하다.

###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3. 2(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류형옥 목사 측을 면담하니, 아래와 같이 진술함을 청취하다.
  - 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회의 화합이 어렵다고 말함.
  - 나. 장기호 목사 측이 제출한 류형옥 목사 측의 당회 구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설명하고 류형옥 목사 측의 해명을 서면으로 받기로 함.
  - 다. 102회 총대로 양측에서 각 2명씩 합의하라는 당시 총회임원회의 결정사항을 류형옥 목사 측에서는 전혀 전달받지 못함을 진술함.
  - 라. 화해조정위원회가 노회 분립의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함.
- ③ 장기호 목사 측을 면담하니, 아래와 같이 진술함을 청취하다.
  - 가. 화해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④ 다음회의는 3월 15일 11시에 갖기로 하되, 그 사이에 위원장으로 하여금 양측을 만나 다시 한번 화해 중재를 시도하도록 맡기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8. 3. 15(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위원장이 3월 13일(화)에 양측을 만난 결과를 보고하니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일시 : 2018년 3월 13일(화) 오전10:30  
 장소 : 일심교회 사무실  
 위원장 강태구 목사 기도후 회의진행

1. 류형욱 목사 측 2인, 오전10시30분 면담하여 그 입장을 청취하다.  
 삼산노회 앞에 정중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화해조정위원의 지도를 받을 것이며 노회 분립을 요청하다.
2. 장기호 목사(노회장) 측 3인, 오후1시부터 면담하여 그 입장을 청취하다.
  - ① 삼산노회 분립 불가하다(총회전산에 등록된 당회 숫자가 안됨).
  - ② 화합 조정이 불가하다(류형욱 목사 측 임시노회 개최, 재판국 치리함).

- ③ 다시 한 번 윤남철 목사를 불러서 화해를 권면하였으나 화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다.
- ④ 서기 정계규 목사로서 하여금 류형욱 목사 측을 만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면하도록 맡기고, 위원장 강태구 목사로서 하여금 장기호 목사 측을 만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권면하도록 맡기다.
- ⑤ 다음 회의는 3월 29일(목) 오전11시에 갖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8. 3. 2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서기가 류형욱 목사 측의 면담결과를 보고하니,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일시 : 2018년 3월 22일  
 장소 : 한사랑교회당  
 면담대상 : 류형욱, 김송일, 이봉철, 도수열  
 면담결과

- ① 화해조정위원회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서 노회 분립을 총회에 현의하기 위한 2018년 봄 정기노회가 열리면, 노회 석상에서 공개 사과하겠다.
- ② 2017년 봄 정기노회(33회) 이후의 상회비를 화해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여 반납하겠다.
- ③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기독교신문에 사과성명서를 내겠다.
- ④ 위와 같은 세가지 사항은 양측이 삼산노회의 분립을 추진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위원장이 장기호 목사 측의 면담결과를 구두로 보고하다.
- ④ 교회 복구에 따른 전산등록 요청(동산교회, 정부근 목사, 2016년 가을노회 결의)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⑤ 다음 회의는 4월 12일(목) 오전11시에 갖되, 양측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원만한 합의를 권면하기로 하다.

###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18. 4. 1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윤남철 목사 측의 대표자 3인을 불러서 류형욱 목사 측이 제시한 확인서를 읽어주고 화해를 권면하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기로 하다.
- ③ 서기 정계규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후에, 윤남철 목사 측의 화해의사를 재확인하니,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서기 윤남철 목사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퇴장하다.
- ④ 윤남철 목사에게 화해의사를 물으니 화해조정위원회가 지도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하다.
- ⑤ 류형욱 목사 측 대표자 3인을 불러서, 이미 제출한 화해를 위한 확인서를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듣다.
- ⑥ 최종적 화해조정을 위한 일시와 장소는 위원들이 양측과 접촉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 (9) 제9차 회의

☞ 일 시 : 2018. 5. 3(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위원장이 양측의 최종 합의를 조율하였으나, 면직자를 선 해별하는 문제로 이견이 있음을 보고하다.
- ③ 화해조정위원회가 지도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양측이 노회를 회집하여 먼저 면직자들을 해별하기 위하여 치리회로 변경하여 문제를 처리한 후에, 분립청원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④ 전산 미등록교회들의 등록문제는 위 3항에 양측이 따를 경우에 처리하기로 하다.
- ⑤ 위와 같은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에 따르지 않는 측에 불이익을 주도록 총회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다.

### (10) 제10차 회의

☞ 일 시 : 2018. 5. 25(금) 13:00

☞ 장 소 : 대전중앙교회당 새가족실

####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다시 한 번 윤남철 목사를 불러서 화해조정위원회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도록 권면하다.
- ③ 윤남철 목사의 답변은 현재 삼산노회의 당회(조직교회)가 35개 밖에 되지 않으므로 노회 분립이 어렵다고 하다.

- ④ 위의 3항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위원회에서 42당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가입 청원한 교회들을 총회 전산에 등록토록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다.
- ⑤ 윤남철 목사로 하여금 화해 및 노회 분립이 불가한 이유서 혹은 화해 및 노회 분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 담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총회사무실로 제출하여 줄 것을 지시하다.
- ⑥ 다음 회의는 6월 7일(목) 오전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 (11) 제11차 회의

☞ 일 시 : 2018. 6. 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윤남철 목사 측에서 제출한 입장표명에 대하여 검토하다.
- ③ 위의 3항에 대하여 이봉철 목사 측의 소명서와 노회분립을 위한 선결사항의 수용여부를 답변 받기로 하다(6월22일까지).
- ④ 다음 회의는 6월 22일(수) 오전11시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결론을 짓기로 하다.

### (12) 제12차 회의

☞ 일 시 : 2018. 7. 3(화)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이봉철 목사 측의 답변서를 검토하다.
- ③ 삼산노회의 임시노회를 7월 23일(월) 오후 1시,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소집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④ 양측에 임시노회 소집을 위한 지시 공문은 서기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계에게 확인받은 후에 발송하기로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7월 23일(월) 오전 10시에 갖기로 하다.

### (13) 제13차 회의

☞ 일 시 : 2018. 7. 23(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에 교회 전산 등록 문제는 오늘 있을 삼산노회 임시노회(총회회관 5층 예배실, 13:00)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기로 하다.
- ③ 잠시 뒤 있을 삼산노회 임시노회 결과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모든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하되 서기가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확인한 후에 총회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위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다.



(14) 제14차 회의

☞ 일 시 : 2018. 8. 14(화) 09: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서기가 작성한 총회임원회 보고서를 낭독하니,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하다.
- ③ 본 위원회의 활동은 최종보고서 제출로 종료하기로 하다.